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고등학교선발고사추첨배정입학제도적용지역의학군설정에관한조례 (충청북도조례
제1891호, 1991. 3. 25)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